

#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- 악취는 미세먼지, 소음 등과 함께 생활환경 저해 및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공해 요인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각종 사업 인·허가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악취방지저감민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 
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